

I. 개 요

1. 일시 : 2012. 12. 14. (10:30~11:50)
2. 장소 : KIEP 8층 회의실
3. 발표자 :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

4. 참석자

전봉걸(시립대학교, 교수)
 장용준(경희대학교, 교수)
 배찬권(KIEP, 부연구위원)
 서정민(KIEP, 부연구위원)
 김종덕(KIEP, 부연구위원)
 선주연(KIEP, 부연구위원)
 이승래(KIEP, 부연구위원)
 오수현(KIEP, 부연구위원)
 김정곤(KIEP, 전문연구원)
 김혁황(KIEP, 전문연구원)
 박혜리(KIEP, 전문연구원)
 이주미(KIEP, 연구원)

4. 제 목

- 외국인 투자 정책 현황과 과제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의 추이 분석
 - 외국인 투자는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자유화 확대 및 투자유치기반 마련으로 크게 증가
 - 하지만, 경제규모 등 투자유입 잠재력 대비 유입실적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☐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
 - 2010년 현재 외투기업이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%를 상회함.
 -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하여, 생산상은 생산단계상의 전후방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 확인
- ☐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평가
 -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사실상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작하여 산업정책과 연계가 부족하였고 외환유입 중심이었음.
 - 최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
- 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및 성과평가
 -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의 미흡한 국내 제도나 관행은 큰 고정비용일 수 있음.

-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함.
- 공개된 기준에 의거한 조세감면위주의 인센티브는 투명성과 행정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협상력에 한계를 보임.

□ 외국인 투자정책의 개편방향

- 앵커형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, 현금지원, 입지지원 및 R&D 자금 지원 등을 조합한 최고수준의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
- 서비스 투자유치확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었음.
-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, 지역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개편.
- 현금지원제도를 전략적 분야에 대한 유치수단으로 확대 개편
- 기존 외투기업 확장형 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도입
- 창업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

2) 토론 내용

□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의 개선이 필요함.

-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, 신고기준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선언적 기준으로 불황기 등에는 도착기준과의 괴리가 커짐.
- 2010년의 경우 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는 130.7억불이었으나, 실제 투자된 금액(도착기준)은 신고기준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54.1억불이었음.

□ 외국인 투자유치 분석에 있어 제조업 부분의 유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투자유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.

-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부가가치 금액의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약 16.4%이고 비제조업의 경우도 약 10.2% 이룸.

□ 외국의 경우 해외투자유치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업의 해소임.

- 유럽국가의 경우 직접적인 실업지원보다는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내투자 증대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실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.
- 한편, 고용위주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.

□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의 투자가 앵커형 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문제가 부각됨.

- 투자유치에 대한 고도의 판단문제가 수반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- 국내에서 높은 기술을 가진 경우 기술적으로 보완관계를 가진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와 병행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
□ 국내 금융제도가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 미흡하므로, 조세지원이나 현금지원이외에 금융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.